

수원지방법원 2021. 7. 15 선고 2020나9377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1. 7. 15 선고 2020나93772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0. 10. 15 선고 2019가단576805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

피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형준

변론종결 2021. 6. 24.

판결선고 2021. 7. 15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9가단576805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B과 피고 사이에 2018. 6. 18. 체결된 10,000,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1) 주위적으로, B과 C 사이에 2018. 7. 20. 체결된 135,000,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) 예비적으로, B과 피고 사이에 2018. 8. 17. 체결된 43,000,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(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)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효진, 판사 이국현, 판사 김광진